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9. 2. 18.

발 의 자 : 김영신, 채재선의원의외 3인

1. 제안이유

우리구 조례 제714호(2008.7.3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외벽과 지붕만 설치되어 있을 뿐 바닥과 바람 막음시설이 미비하고 편의시설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,

또한 일부 사용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료를 납부한 주민들과의 형편성에 어긋나므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“3개월이 경과한”을 “바닥,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의 사용승인 다음”으로 함.

3. 관련법규

지방자치법 제136조(사용료)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집행부와 협의 (2009년 추경 시 반영)

6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“3개월이 경과한”을 “바닥,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 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의 사용승인 다음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 (조례 제 714호)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08. 7. 31)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규정 중 <u>와우산 배드민턴장</u> 사용료는 공포 후 <u>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</u> 시행한다.</p> <p>② 생략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08. 7. 31)</p> <p>①(시행일)----- ----- ----- <u>바닥,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(냉난방, 탈의실, 샤워실)의 사용승인</u> <u>다음</u> -----.</p> <p>②현행과 같음.</p>